

의안번호	2217660
의 퇴 인	이용우 의원
회 답 일	2026.5.12.
추 계 번호	26B159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급여 지급기간을 확대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시나리오에 따라 2027년 59.0억원, 2031년 63.1~66.4억원으로 향후 5년간 총 305.0~314.9억원(연평균 61.0~63.0억원)으로 추계
 - 시나리오1은 난임치료휴가 사용현황을 토대로 사업대상자를 산출하였으며, 시나리오2는 고용노동부의 2026년 예산 산출 근거를 토대로 사업대상자를 산출한 결과임
 - 본 추계서는 개정안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일수를 고려하여 추산하였으며, 향후 실제 난임치료휴가 사용 과정에서 시술 내용 등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사용 일수가 차등 적용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음

[표 1]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7~2031년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난임치료휴가(시나리오1)	59.0	60.0	61.0	62.0	63.1	305.0	61.0
난임치료휴가(시나리오2)	59.0	61.2	63.4	64.9	66.4	314.9	63.0

-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장래에 발생할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변화와 실제 지급단가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5. 각 개인의 시술 내용 및 유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실제 사용 일수 및 이에 대한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6조(지급 기간 등)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제1항)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0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6조(지급 기간 등)	○	• 비용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부칙과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 동 개정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6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은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 기간을 현행 2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난임치료휴가 급여에 관한 추가재정소요는 시나리오별로 나누어 추계하며, 시나리오1은 2025~2026년 월별 난임치료휴가 사용현황을 토대로 산출하고, 시나리오2는 고용노동부의 2026년 예산 산출 근거 및 출생아 수 전망을 토대로 산출함
 - 본 추계의 추가재정소요는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인식 및 행태의 변화와 장래에 발생할 혼인율, 출산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1) (시나리오 1) 난임치료휴가 사용현황에 근거한 추가재정소요

- 시나리오1은 2025년 2월부터 시행된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수급자 수를 바탕으로 추산한 것으로서, 장래에 발생할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인식 및 행태의 변화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 (사용대상자 수) 장래에 발생할 난임치료휴가자 수는 2025~2026년 월별 난임치료휴가 사용현황을 토대로 산출하며, 동 제도가 2025년 2월 시행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의 안착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추산

[표 2] 난임치료휴가 사용현황: 2025~2026년

(단위: 명)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난임치료휴가 수급자 수	0	2	27	63	72	93	89
구분	9월	10월	11월	12월	2026년 1월	2026년 2월	2026년 3월
난임치료휴가 수급자 수	114	94	105	128	139	103	118

자료: 고용노동부

- 2026~2027년 발생할 월별 난임치료휴가 수급자 수는 2025년 하반기(7~12월) 난임치료휴가급여 수급자 수의 월평균 증가율(6.6%)을 적용하여 추계

[표 3] 난임치료휴가 사용자 수(추정치)

(단위: 명)

202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난임치료휴가 수급자 수	139	103	118	117	125	133
2026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난임치료휴가 수급자 수	142	151	161	172	183	195
202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난임치료휴가 수급자 수	208	222	236	252	269	286
2027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난임치료휴가 수급자 수	305	325	347	370	394	420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기간(2027~2031년) 동안 고용보험가입자 수는 최근 5년간(2021~2025년) 고용보험가입자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

[표 4] 고용보험가입자 수: 2021~2025년

(단위: 천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가율
고용보험가입자 수	14,550	14,899	15,200	15,365	15,556	1.7%

자료: 고용보험 DB

- 2028년 이후 난임치료휴가 사용자 수는 2027년 기준 고용보험가입자 수 대비 난임치료휴가자 수의 비율(0.02%)을 적용하여 산출

[표 5] 고용보험가입자 및 난임치료휴가 사용자 수(추정치): 2027~2031년

(단위: 천명)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고용보험가입자 수(A)	16,085	16,356	16,632	16,912	17,197
난임치료휴가 사용자 수 (B=A×0.02%)	3.9	4.0	4.0	4.1	4.2

주: 1. 각 표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실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정치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급단가) 2026년 예산 기준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지원단가(83,913원)를 적용하되, 동 금액이 추계기간 중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지급기간) 개정안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는 20일이며, 현행 대비 18일 확대되므로 확대된 기간에 따른 재정소요를 산출
 - － 장래의 제도 설계 과정에서 각 개인의 시술 내용 및 유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실제 사용 일수 및 이에 대한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지급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추계서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확대된 난임치료휴가의 지급기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 참고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¹⁾는 난임치료시술휴가 일수를 규정하고 있지

1) 제20조(특별휴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않으나 시술 유형에 따라 사용 가능한 일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여성 국가공무원의 1인당 평균 난임치료시술휴가 사용일수는 4.3일²⁾임

[표 6] 난임치료휴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시나리오1	사업대상자 수(A, 천명)	3.9	4.0	4.0	4.1	4.2
	추가지급기간(B1, 일)	18	18	18	18	18
	1일 지원단가(C, 원)	83,913	83,913	83,913	83,913	83,913
	추가재정소요(D1, 억원)	59.0	60.0	61.0	62.0	63.1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장래에 발생할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변화와 실제 지급단가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시나리오 2) 2026년 예산 산출 자료에 근거한 추가재정소요

□ 시나리오2는 2026년 예산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추산한 것으로서, 장래에 발생할 실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인식 및 행태의 변화 등에 따라 추가재정 소요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 산출 자료에서 난임치료휴가의 사용대상자 수를 난임치료 환자 수에 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임금근로자 비율, 임금근로자 대비 고용보험가입자 비율,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비율, 난임치료휴가 예상 사용률 등을 적용하여 산출

[표 7] 2026년 예산 기준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인원

(지원인원: 14,678명) $136,905\text{명} \times 55.4\% \times 77\% \times 71.4\% \times 35.2\%$

- (136,905명) 2023년 난임시술(보조생식술) 환자 수
- (55.4%) 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임금근로자 비율
- (77.0%) 임금근로자 대비 고용보험가입자 비율
- (71.4%)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비율
- (35.2%) 휴가 예상 사용률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2026.

2) 자료: 인사혁신처

- 시나리오2는 추계기간(2027~2031년) 동안 난임치료 환자 수는 2024년 기준 출생아 수 대비 난임시술 환자 수(161,083명³⁾)의 비중(73.9%)이 추계기간(2027~2031년) 동안 유지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표 8] 난임치료 환자 수(추정치): 2027~2031년

(단위: 천명)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출생아 수(A)	239	248	257	263	269
난임치료 환자 수(B=A×73.9%)	177	183	190	194	199

주: 1. 각 표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실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정치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출생아 수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산출

- 시나리오2에서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난임치료 환자 수는 2026년 예산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산출하며, 추계기간(2027~2031년) 동안 생산가능인구 대비 임금근로자의 비율과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비율 등이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에 명시된 수치가 유지된다고 가정
- 다만, 임금근로자 고용보험가입자 비율은 2025년 수치(76.2%)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

[표 9] 난임치료휴가 사용자 수(추정치):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난임치료 환자 수(A, 명)	176,600	183,250	189,901	194,334	198,768
임금근로자의 비율(B)	55.4%	55.4%	55.4%	55.4%	55.4%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C)	76.2%	76.2%	76.2%	76.2%	76.2%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비율(D)	71.4%	71.4%	71.4%	71.4%	71.4%
우선지원대상 기업 난임치료 환자 수(E=A×B×C×D, 천명)	53.1	55.1	57.1	58.4	59.8

주: 1. 각 표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실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정치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2025.

- 본 추계서의 난임치료휴가 사용률은 2027년 기준 우선지원대상 기업 난임치료 환자 수 대비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자 수의 비중을 토대로 산출(7.4%)하며, 해당 난임치료휴가 사용률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
- 실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변화 등으로 인해 난임치료휴가 사용률이 크게 확대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크게 확대될 수 있으나 본 추계서는

3) 자료: 국가데이터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고려하지 않음

[표 10] 난임치료휴가 사용자 수(추정치): 2027~2031년

(단위: 천명)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우선지원대상 기업 난임치료 환자 수(A)	53.1	55.1	57.1	58.4	59.8
난임치료휴가급여 수급자 수(B)	3.9	4.1	4.2	4.3	4.4

주: 1. 각 표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실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정치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2025.

- (지급단가) 2026년 예산 기준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지원단가(83,913원)를 적용하되, 동 금액이 추계기간 중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지급기간) 18일
 - 장래의 제도 설계 과정에서 각 개인의 시술 내용 및 유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실제 사용 일수 및 이에 대한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지급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추계서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확대된 난임치료휴가의 지급기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표 11] 난임치료휴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시나리오2	사업대상자 수(A, 천명)	3.9	4.1	4.2	4.3	4.4
	추가지급기간(B1, 일)	18	18	18	18	18
	1일 지원단가(C, 원)	83,913	83,913	83,913	83,913	83,913
	추가재정소요(D1, 억원)	59.0	61.2	63.4	64.9	66.4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장래에 발생할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변화와 실제 지급단가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서의 시나리오1은 2025~2026년 난임치료휴가의 사용현황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안착 정도 및 난임치료휴가 사용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서의 시나리오2는 2026년 예산 산출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장래에 발생할 난임치료 환자 수 및 고용보험가입률 등 주요 가정의 변화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